

보도 시점 2026. 2. 27.(금) 10:00 배포 2026. 2. 27.(금) 08:00

한-태국 국세청, 국내재산 무단반출 차단 위해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등 포괄적 세정협력에 뜻모았다

- 임광현 국세청장, 서울에서 제4차 한·태국 국세청장회의 개최
- 역외탈세 대응과 진출기업 세정지원 적극 이행 위해 전략적 조세공조협정 체결

□ 임광현 국세청장은 2월 26일(목)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(Kulaya Tantitemit)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·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

- 양 청장은 ▲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▲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,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포괄적 합의문(MOU)에 서명하였습니다.

□ 태국은 '24년 기준 아세안(ASEAN) 내에서 GDP 규모 3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규모가 큼니다.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*에 있고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**로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파트너입니다.

* 태국은 1958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여, 정치, 경제,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중

** 해외진출 가동법인 수('25년 KOTRA) : 1위 베트남(2,602개), 2위 중국(2,397개), 3위 미국(933개), **4위 태국(348개)** 등

□ 임광현 청장은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.

- 양 국세청장은 해외은닉소득·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과세 정보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. 임 청장은 나아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* 체계 구축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.

* [징수공조] 한 국가가 자국 세법에 따라 확정된 조세채권을 상대국에 요청하여, 상대국이 대신 징수해주거나 자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도와주는 국가 간 협력

- 또한, 양국은 현재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여 과세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,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확대 교환하여 정보교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

□ 임 청장은 이중과세 해소, 세무설명회 개최, 제도개선 등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요청하였고, 이에 대해 쿨라야 탄티테밋 청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.

- 먼저, 임 청장은 최근 양국이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사전승인* (Advance Pricing Arrangement, APA)의 타결률이 높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고, 앞으로도 우리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* [이전가격 사전승인]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의 국제거래 가격을 과세당국 간 협의로 사전에 결정하여,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방법

- 또한, 임 청장은 태국 국세청에 우리 진출기업과 교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세무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활성화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.

- 한편, 태국에는 제조·운수·도소매 등 다양한 업종의 우리나라 대기업이 진출해 있고 내년부터 현지에서 글로벌최저한세*를 신고하게 됩니다. 임 청장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세무안내를 당부하는 동시에 세 부담 완화대책으로 투자 관련 세제혜택 제도 보완을 제안하였습니다.

* [글로벌최저한세] 매출액이 7.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,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(15%)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

- 태국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계 기업의 투자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·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왔습니다. 그러나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되면 기존 세제혜택은 투자 인센티브 효과가 감소*하게 됩니다.

* 세액감면으로 인해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(15%)보다 낮아질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일부를 글로벌최저한세로 부담하게 되어 감면효과 약화

- 그러나, 올해 1월 OECD가 변경한 기준*에 맞추어 태국 세법을 개정하게 되면, 당초 우리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할 때 약속받은 투자 인센티브 효과를 예전과 유사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.

* 연구개발비용, 인건비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예외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 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봄

-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세정 각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협력방안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은 두 기관 간 조세공조를 위한 행정협정(MOU)에 서명하였습니다.
- 이는 양 기관의 미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
- 한편, 양 청장은 AI 시대에서 세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.
- 임 청장은 「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」 발표를 공유하면서 납세편의 증진, 복지세정, 공정과세, 성실신고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, 향후 세정 운영에 있어 AI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.
 - 더불어 국세청에서는 태국 세정의 조세투명성 제고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방한단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·제공하였습니다.
 - 쿨라야 청장도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과세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활용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하며, 직접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석하는 등 태국 세정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.
- 앞으로도 국세청은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,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 이상훈 (044-204-2861)
		담당자	사무관 김성웅 (044-204-2872)
<협조>	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	책임자	과 장 송윤정 (044-204-2901)
		담당자	사무관 강승진 (044-204-2942)
<협조>	국제조세관리관실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	책임자	과 장 김태형 (044-204-2831)
		담당자	사무관 권석원 (044-204-2837)



□ 임광현 청장과 쿨라야 탄티테밋 국세청장의 접견 및 기념사진 촬영



□ 기념촬영하는 한-태국 국세청장

- 왼쪽부터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, 임광현 국세청장,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, 짓따 니사는 상임고문



□ 제4차 한-태국 국세청장회의에서 발언하는 임광현 국세청장



□ 임광현 청장과 쿨라야 탄티테밋 국세청장의 조세행정 약정 서명 후 기념사진 촬영